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6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219호	(새)청도코미디시장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길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9.10.2.)
제2014-225호	청도성수월마을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장기길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8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9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사 건 명 : 낚시어선 골드문호·어선 세운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53호)
- 피 요 청 자 : 김**(경남 거제시 장목면 황포4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세운호가 2019. 6. 9. 04:24경 경남 창원시 잠도등부표에서 남동쪽으로 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골드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골드문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만, 귀하가 음주를 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98%)로 빠른 속력으로 이 선박을 조종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항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않고, 선박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조종하며 무엇보다도 당직에 임하여서는 철저히 경계를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m²)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평창시 방림면 운교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8,803,299	8,758,011	4,673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 도로건설 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30-402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9-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1차 형제자매수령, 2차 반송(보관기관경과)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유한회사 지엘, 대표 이진욱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42, 304동 702호(미룡동, 미룡주공3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북지방조달청과 가격협상한 '경관조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